중앙동 3003번지 유해 유사 종교 건축 중단 및 허가 취소에 대한 소극 행정

□ 이름(공직자): 고성식 (중원구 건축과장)

□ 근무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건축과

□ 청구 건명: 중앙동 3003번지 유해 유사 종교 건축 중단 및 허가 취소에 대한 소극 행정

□ 민원 내용의 요지 :

중앙동 3003번지에 성남시 중원구 건축과에서 허가한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교회"라 칭함)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는 <u>公益을 현저하게 害</u>하고, <u>헌법 제37조에 규정</u>된 公共福利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건축 허가입니다.

중앙동 3003번지의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는 대한민국헌법에 의해 보장받는, 중앙동 주민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해당 건축 허가는, 중앙동 5,700여 세대, 15,000여 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극심한 지역 사회 갈등을 일으켜, 제반 사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만들고,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한 公共福利를 심각하게침해하는 건축 허가입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법의목적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건축 허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남시 중원구 건축과에서는 공청회 등의 개최를 통해, <u>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일체 없이, 건축을 허가</u>하였으며, 그로 인해 15,000명이 넘는 지역 주민들이 基本權과 公共福利를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초유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교육을 받을 권리, 재산권, 환경권, 건강권, 종교의 자유 등 여러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u>공공복리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현실</u>과, <u>현장의 지리적 환경</u> 실태에 대해서는 일체 고민하지 않고, 기존의 업무 관행에 따라 서류만 체크하여, '종교시설용지' 부지에 '종교시설'의 건축 신청이 들어왔으니, 건축을 허가 한다는 중원구 건축과 고성식 건축과 장의 업무 처리 방식은,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u>적당편의</u>적인 업무 방식이며,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해당됩니다.

주민 2,839명이 다수인 민원 (No.48660) 을 통해서 주민들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는 다는 사실과 해당 건축허가가 공공복리를 쇠퇴시킨다는 사실을 이유로 건축 즉각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주민 2,839명이 뜻을 모아 제출한 다수인 민원에 대해서, 중원구 고성식 건축과장은 "주민 2,839명이 민원을 한 것이나, 건축주 1명의 건축 허가를 신청한 것이나 자신이 볼 때는 똑같다." 며, 公共福利의 본질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을 하면서, '종교시설용지'에 '종교시설'용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앵무새 같은 동일한 답변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은 ①현장의 실태 조사, ②교육 전문가/부동산 전문가/교통 분야 전문가/도시계획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접수, ③주민 공청회의 개최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 하나 기울이지 않으며, 이미 건축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u>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던 어쨌던 간에,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한 공사 중단 및 건축 허가 취소 등의 조치는 구청 스스로 할 수는 없는 일</u>이라고 주장하며, 중원구와 건축과의 체면만을 중시하면서, <u>복지부동</u>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원구 건축과와 고성식 건축과장의 업무 행태는, 소국 행정의 대표적인 標本이며, 공무원 교육과정에 소극행정의 대표적인 예시로 실릴 법 한 업무 행태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원구 중앙동 주민 일동은 중원구 건축과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성남시 행정의 정상화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입각한, 正義가 바로 선 나라를 만들기 위해, 소극 행정 신고를 하오니 적극적인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基本權 侵害 및 公共福利 沮害 사실의 상세:

대한민국헌법 제20조에서 이야기하는 종교의 자유는 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로,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이 중 종교적 행위의 자유와 종교적 집회·결사의 자유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며, 따라서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버티고 앉아 자신의 종교를 믿으라고 포교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주거 침입죄에 해당하며, 개인의 사생활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즉, 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기본권과 공공복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0조(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3조(재산권 보장):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5조(환경권):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건강권):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한계):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건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동 3003번지에 대법원 판례에서 '개인의 인생을 파멸하고 가정의 행복을 깨는 사이비 종교 단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대상이 아님으로 판단된 바 있는, 사이비(가짜) 종교 단 체인 하나님의교회의 건축물이 건축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공공복리의 쇠퇴 및 기본권 침해가 일어납니다.

1) 중앙동 3003번지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 허가는 영유아 및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환경권 침해를 유발합니다. (공공복리의 저해 및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은 종교 시설에 모여서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종교 시설에서 모여 주변 지역으로 포교를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일별로 교리 공부와 주변 지역 포교에 대한 일정이 짜여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앙동 3003번지 종교부지는 3001번지에 위치한 다함께돌봄센터와 불과 50m, 성남제일초등학교와 불과 50m 남짓 떨어져 있으며, 어린이공원과도 바로 인접하여붙어 있습니다.



그림1 중앙동 3003번지 하나님의교회 공사 현장 주변지역 환경 (출처 : 카카오맵 캡쳐)

유소년기부터 초등학생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는 아직 가치관의 형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로, 보호와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 시기인데, 하나님의교회는 길을 가고 있는 주부나 아이와 함께 둘이 있는 엄마를 집요하게 따라오면서 포교활동을 하는 노방전도나, 편의점, 학원, 뷰티숍, 카페 등 인근의 상가 및 커뮤니티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생활속에 침투하는 전략으로 포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최근에 (성남)중앙공원이나 서현역 등지에 모여 지나가는 천진난만한 초등학생들을 불러서 포교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지만, 해당 초등학생들의 부모가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목격만 하다가 갔다는 목격 사례나, 스타벅스에 앉아있다가 나왔더니, 두 명이 따라붙으며 접근해온 뒤 포교를 했다는 경험 사례 등, 온/오프라인 상의 여러 기록 및 사례로부터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포교를 하지 않는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아세즈 스타 (ASEZ STAR) 라는 중고등학생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활동을 포교활동에 적극 이용하고 있으며, 친구나 상급생 등 또래집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아이들의 특성을 이용하여, 반 친구들을 전교생전도 활동의 타겟으로 정한 뒤, 전시회나 요리 행사 등에 같이 가자고 접근을 하는 사례도 다수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활동 단체나, 프로그램, 전시회 및 행사는 결국 성인에 의해서 조직 및 기획되고 운영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성인에 의해 미성년자 포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교회는 총회에서 슬로건으로, '학생은 학교에서, 군인은 군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전도를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도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교회는 가정의 위기를 초래하고, 종말이 멀지 않았다고 가르치며, 재산의 헌납을 유도하고, 가정의 불화를 야기시키는 사이비 종교이며, 종교의 겉모습을 하고 있는 가짜 종교라는 사실이,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인정된 바 있는 유사 종교 단체입니다. 실제로 2024년 현재에도 올해는 장길자 교주와 함께 신도들이 다같이 하늘로 승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증언도확인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다음의 내용이 정정보도가 필요 없는 사항 (사실로 인정되는 사항) 으로 판단된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2015나2032729, 2015나2032736, 2016도 21129, *2015노542, 2017나2069268) (첨부 2 참조)

- 가) 하나님의 교회가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였음.
- 나) 하나님의교회 총회장의 저서에 나온 구절은 "가족과 종교적 갈등이 생길 경우, 가족, 가정보다는 신앙을 우선시하여야 한다"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 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이 관련된 이혼 판결문 등에 의하면 부녀자 신도들 중 종교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됨.
- 라) 부녀자 신도들이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교회에 데려가 교리를 가르치거나, 긴 예배에 참 여시키거나, 조용히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 벌을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하나님의교회의 포교 방법 및 반사회적 종교활동 형태와 그에 따라 가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볼 때, 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님의교회가 해당 시설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커뮤니티에서 포교 활동을 하게 될 경우, 아직 가치관의 형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이,

- 가) 교리 공부 및 포교 관리용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받아서, 교리 공부 및 포교 모임에 출석하고, 전도 실적을 쌓도록 집요하게 압박을 당하여, 교과 학습에 할애한 시간을 빼앗기게 되고,
- 나) 하나님의교회가 주장했던 종말론의 영향을 받아, 학업을 포기하고 중단하게 하거나,
- 다) 가정의 위기 및 불화로 인해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되거나,
- 라) 노방전도나 방문전도, 개인전도 등 공격적인 포교활동으로 인하여 학습에 직접적인 지 장을 받게 되거나,
- 마) 반복되는 안상홍과 장길자에 대한 세뇌 영상의 노출로 학생들의 자유로운 사고를 방해하고, 세뇌시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중원구 건축과의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는, 중앙 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2)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은 중앙동 주민들에게 보장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을 침해합니다. (공공복리의 저해 및 헌법 제23조 재산권의 침해)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이 되며, 재산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는 상술한 대법원 판례나 여러 소송 사례로 볼 때, 반사회적 성격을 강하게 띄고 있는 사이비 종교 단체이기 때문에, 주민들 절대 다수는 하나님의교회 시설 근처에 거주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는 같은 성남시 내에서 하나님의교회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한 증거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판교신도시 백현동에 하나님의교회 옆에 위치한 백현마을9단지 아파트는 하나님의교회와 떨어진 백현마을8단지 아파트에 비해서, 동일한 340여세대 규모의 입주 16년차의 아파트 단지이지만, 그림2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동일 면적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전세 가격 기준으로, 평균선 및 이동평균선상에서 약 5000만원에서 1억원가까이 더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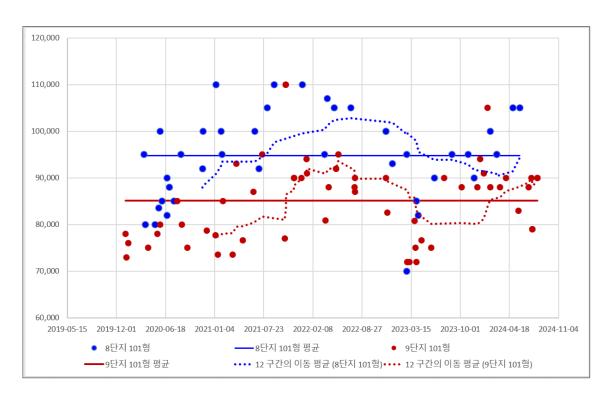


그림2. 판교 백현마을 8단지와 9단지의 전세가격 비교 (국토교통부실거래가, 계약갱신청구권사용제외)

전세 가격은 거주 실수요자가 얼마나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싶어하는지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시장 지표이며, 전세 가격을 전세가율로 나누어 환산할 시에는 매매 가격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판교 백현마을의 전세 가격을 보면, 처음에 모집공고를 할 당시에는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던 두 단지의 운명이 이토록 갈리게 된 이유가, 주변에 반사회적 유해 사이비종교 시설이 있는지 여부의 차이 때문이라는 것을 라는 것이 손쉽게 알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시장 참가자들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중앙동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를 주로 주고받는 '호갱노노' 앱에서는 이러한 트렌드를 손쉽게 느낄 수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경우에는 많은 수가, 부동산 매도를 문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동 3003번지 부지 주위에는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 2,411세대가 입주하여 살고 있고, 해링 턴스퀘어신흥역 1,972세대가 분양을 마쳤습니다. 이들 세대에, 계산1의 추정 계산 내용과 같이 세 대당 약 4,480만 원씩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할 경우, 합쳐서 2,000억원에 가까운 사유재산권 피 해를 받게 됩니다. A = 백현마을 Case 에서 통계 기간동안 8단지와 9단지의 전세가 산술평균 차이액 = 9,627만원

B = 전세가율 = 61%

C = 지역(시세) 보정 계수 = 0.49

 $D = 전용 면적 보정 계수 = 59m^2/101m^2 = 0.58$

세대당 매매가 손해 추정액 = A ÷ B × C × D = 약 4,480 만원 오피스텔을 제외한 세대수 = 2411세대 + 1972세대 = 4383세대 전체 소유주 손해 추정액 = 4,480만원 × 4383 세대 = 약 1,963 억원

계산1.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에 따라 중앙동 주민들이 받는 재산권 피해 추정액

(※ 해당 계산은 소유전용 면적 59m²를 기준으로 하여, 판교 백현마을 8단지와 9단지의 전세가격 비교 자료를 기준으로 보정을 거쳐 추정한 계산이며, 소유한 세대의 면적, 시세 변동에 따라 손해 추정액의 규모는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바꿔 말하면 중원구 건축과에서 하나님의교회를 건축 허가함에 따라서, 중앙동에 거주중인 4,623 세대, 약 1만여명 이상의 주민들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의 피해를 받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3) 중앙동 3003번지 하나님의 교회의 건축 허가는 교통 사고 안전 문제를 유발합니다. (공공복리의 저해 및 헌법 제35조 환경권의 침해)

중앙동 3003번지 '2024-건축과-신축허가-2'에 따르면 하나님의교회에서 연면적 1495.07 평방미터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의 시설을 건축하면서 마련한 주차면수는 단지 15대입니다.

종교집회는 그 특성상, 많은 수의 신도들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모이게 되므로, 다른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과는 다르게, 동시에 많은 인원과 차량이 한꺼번에 모이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건축면적 348.38 평방미터 중 3개의 층에서 동시에 종교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1인 (1좌석) 수용 바닥면적 2.0 평방미터 기준으로 계산시 500여명 가량의 신도가 동시에 종교 집회에 참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중 지역 주민 신도 및 대중교통 이용 신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1/3에 해당되는 33% 정도의 인원이 차량을 이용해서 해당 시설을 방문한다고 가정할 시, 165대의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15대의 주차면만이 마련된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통과되어, 하나님의교회가 완공 된 후 건축 허가 목적에 기재된 바에 따라 종교 집회가 이루어지게 될 시에는, 교통 혼잡과 대로 변 노상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 방해, 교통 시야 확보 제한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보행자 안전 사고 발생 증가 등이 기정사실이 됩니다.

특히 중앙동 3003번지 주변은 신흥역하늘채랜더스원과 해링턴스퀘어신흥역의 주출입구가 위치해 있어 교통량이 매우 많은 지역이며, 이미 혼잡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의한 도로 혼잡도 증가는 교통 문제를 매우 가중시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불법 주차로 도로 양측에 차량들이 주차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져 도로 주행 시 보행자와 다른 차량을 인지하기 힘들어져 교통 사고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주변에 초등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도로 혼잡도 증가로 인한 교통 안전 문제가 발생될 시, 이곳을 통학로로 사용하는 유아들과 학생들의 보행자 안전이 가장 크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남시와 중원구청은 중앙동 3003번지에 해당 건축을 허가를 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으며, 교통혼잡 유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전혀 하지 않 은 채, 책상위에서 서류만 가지고 현장 상황은 일체 고려하지 않은 건축 허가를 하여, 그 결과 크 나큰 혼돈과 재앙적 교통 참사가 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원구 건축과의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 받게 되었습니다.

4)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면 중앙동 주민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36조의 건강권을 침해합니다. (공공복리의 저해 및 헌법 제36조 건강권의 침해)

대법원 판결에서, "하나님의교회로 인해 이혼, 가출, 재산 헌납, 아동 학대 등 수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표현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하나님의교회 피해자 아이들의 문장 완성 검사나 정신과 검사 결과를 보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불안 장애 등 정신 질환 피해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첨부 3 참조)

중앙동 3003번지에 하나님의교회가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은 반복되는 노방 전도와의 접촉으로 스트레스, 우울증을 겪을 수 있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접하게 된 주민의 경우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 불안 등을 겪게 되어 건강권을 침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신흥역과 수진역 부근에서 노방 전도가 부쩍 늘어났으며, 하나님의교회가 건축중이라는 사실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 불면증 등의 증세를 겪는 등 건강권을 침해 받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중원구 건축과의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이로 인한 여러 질병의 유병률 증가를 일으키고, 정신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며, 중앙동 지역의 公衆保健의 위기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여, 공공복리를 해하는 건축 허가입니다.

5. 하나님의 교회의 종교 시설 거점 기반 공격적 포교는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공공복리의 저해 및 헌법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침해)

하나님의교회는 종교 시설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주민들 커뮤니티, 학교와 사회, 아파트 상가 등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여 전략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은 종교 시설에 모여서 함께 교리 공부를 하고, 종교 시설에서 모여 주변 지역으로 포교를 다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요일별로 교리 공부와 주변 지역 포교에 대한 일정이 짜여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동에 하나님의교회가 건축되면, 이를 거점으로 중앙동 주민들의 일상 생활 속에 침투하여 전략적인 포교 활동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중앙동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가 거리에서의 지속적인 노방 전도와 가정 방문 등 과도한 포교 활동을 함으로 인해 심리적 압박과 불쾌감을 느끼며,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 받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각 가정의 종교적 가치관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주민들이 하나님의교회와 무관하게 생활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역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중원구 건축과의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이, 중앙동 3003번지에 중원구 건축과(건축과장 : 고성식)에서 일체의 지역 주민들 의견청취 및 전문가 자문 없이, 허가한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는, 중앙동 주민들의 생활에 심각한문제를 일으키고, 헌법이 보장하는 중앙동 주민들의 여러 기본권들을 침해하며, 중앙동 5,700여세대, 15,000여명에 이르는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극심한 지역 사회 갈등을 일으켜 제반 사회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등, 公益을 현저하게 害하는, 헌법 제37조에서 규정한 公共福利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기본권을 침해 받는 중앙동 주민 2,839명은 2024년 9월 20일, 다수인 민원을 통해 건축 중단 및 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중원구 건축과의 고성식 건축과장은 현장의 실태 조사, 교육 전문가/부동산 전문가/교통 분야 전문가/도시계획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자문 의견 접수, 주민 공청회의 개최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어느 하나 기울이지 않으며, 이미 건축 허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를 받던 어쨌던 간에, 주민 권리 보호를 위해서 공사 중단 및 건축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구청 스스로 취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하며, 중원구청과 건축과의 체면만을 중시한 채, 복지부동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남시 중원구 건축과의 업무 행태는,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u>적당편의</u>적인 업무 방식이자, 현실과 동떨어진 <u>탁상행정</u>이며, 중원구 건축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u>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면서, 主權在民을</u>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고성식 건축과장은 주민들에게 帝王的으로 군림하려는 공무원의 모습만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소극 행정 신고를 하오니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첨부1. 중앙동 3003번지 건축허가 개요

첨부2. 판결문 (사건번호2015나2032729, 2015노542)

첨부3. 언론에서 다룬 하나님의 교회의 미성년자 포교 및 피해 사례

첨부1.

중앙동 3003번지 건축허가 개요

건	축 허 가 .	丑 ス] 판
공사명	WMC 성남중앙교회 신축공사		
허가번호	2024-건축과-신축허가-2		
허가일	2024년 06월 12일		
건축주	하나님의교회세계복음선교협회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300	3	
주용도	종교시설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건축면적(m²)	348.38m²	건폐율(%)	49.73%
연면적(m)	1,495.07m	용적률(%)	205.99%
공사예정기간	2024년 08월 01일 ~ 2025년 08월	를 31일	
설계자	예인피앤에이치건축사사무소		2 02-561-6197
시공사	하우텍씨엔알건설(주)		☼ 02-3446-4850
현장대리인	하우텍씨엔알건설(주)		☎ 02-3446-4850
감리자	예인피앤에이치건축사사무소		☎ 02-561-6197
	건축공사 일반사항 : 건축허가팀		3 031-729-6392
불편사항신고	도로무단점용(적치) : 건설행정팀		☎ 031-729-6333
	비산먼지,소음진동 : 환경보호팀		☎ 031-729-6291

위 현장은 중원구청에서 적법하게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신축 중인 현장입니다.

2024년 06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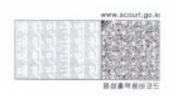
중 원 구 청 장

첨부2.

판결문

(사건번호2015나2032729, 2015노542)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형 사 부

등본입니다. 2015. 11. 16. 법원사무관 고 재 🖸



판 결

사

건 2015노542 가. 명예훼손

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다. 모욕

피 고 인 1. 가. 나.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나. 다. 조

주거

등록기준지 않

3. 가. 라. 마.

주거 김

미

등록기준지 서울





같은 피켓을 세워놓고, 위 항 기재와 같은 유인물과 소책자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2014고단2416]

피고인 (속칭 '하피모') 회원이다.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부녀들에게 탈퇴한 여신도를 폭행하라고 사주하거나 4살짜리 아이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도록 사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014. 3. 6. 15:00경 성남시 분당구 방아로46번길 7 하나님의 교회 분당 새예루살렘교회 앞 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 탈퇴자입니다. 김주철이 하나님으로 임명한 장길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부녀들이 탈퇴한 여신도의 집을 찾아가 탈퇴자를 노끈으로 묶어 놓고 폭행한 것과 4살짜리 아이의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은 엽기적인 사건이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 www.하피모.com"이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혼녀 장길자는 회개하라"라고 수차례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 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선전하고 새로운 신자를 규합하기 위한 선교 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





하여 개종을 권고하는 자유도 포함되는바. 종교적 선전과 타 종교에 대한 비판 등은 동시에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 경우 종교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0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특별규정의 성 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고, 특히 그 언론・출판의 목적이 다른 종 교나 종교집단에 대한 신앙교리 논쟁으로서 같은 종파에 속하는 신자들에게 비판하고 자 하는 내용을 알리고 아울러 다른 종파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신앙교리 내 용과 반대종파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타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종교 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법익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그 비판행위 로 얼어지는 이익, 가치와 공표가 이루어진 범위의 광협, 그 표현방법 등 그 비판행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비판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 는 타인의 명예 침해의 정도를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 고 2008다842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종교 그 자체나 종교가 신봉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종교를 신봉하는 국민, 즉 신앙인이고, 종교에 대한 비판은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바로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타 종교의 신앙의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것이 그 종교를 신





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법리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등 하나님의 교회 신도 4명은 위 교회에 같이 다닌 피해자 이○○이 약 1년 전 교리문제로 위 교회를 나간 후 주변에 이를 비방하고 다니는데 격분하여 피해 자 이○○ 집에 들어가 이○○의 손목과 다리 및 가슴을 묶고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의 아들인 피해자 이△△(4세)의 손목을 묶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 폭행하여 이들을 감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00고단2426)을 선





고받았고, 그 무렵 대구 MBC 방송국은 하나님의 교회 교인들이 탈퇴한 교인들을 찾아 가 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6건에 이른다는 내용의 뉴스를 방송하였다.

- 2) 위 사건들과 판련하여 피고인들은 "이러한 엽기적인 사건은 누구의 사주였는지 확실히 답변바랍니다"라는 표현을 하였던바, 이는 위 가해자들이 소속된 단체 및 그 대표자에게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정도의 표현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두고 허 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3) 가사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표현을 그 표현장소, 시기,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교회 또는 장길자가 위와 같은 범행을 사주하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설시한 것과 같은 판결 및 방송 등을 접한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허위 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시한부 종말론'이란 표현과 관련하여 살피건대, 하나님의 교회는 1985. 2. 25. 경 안상홍 사망 이후 199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 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였으며,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었던 점, KBS 방송국의 '추적 60분', SBS 방송국의 '추적 사건과 사람들', MBC 방송국의 'PD 수첩' 등 시사고발프로그램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하였던 점, 하나님의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하였던 점, 하나님의 교회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켓 등에 기재한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표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5) 그 밖에 피고인들이 적시한 '재산 갈취', '교인들의 가출, 이혼 조장' 등의 표현





에 관하여 살피건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상 그 표현 안에 다소 과장·왜 곡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있더라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성질상 어느 정도의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게 되는 종교에 대한 비판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종교에 대하여 다소 모욕적이거나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법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표현 역시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당심에서 변경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의 이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무	
	판사	이동진	
	과사	박소연	

AC LAC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3 민 사 부

판 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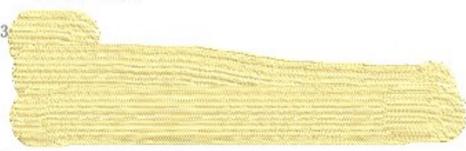
사 건 2015나2032729 정정 및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50 (수내동, 수내동업무빌딩) 대표자 총회장 김주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1. 국민일보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여의도동, C.C.M.M빌딩) 대표이사 최삼규
- 쿠키미디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문화콘텐츠센터 7층
 대표이사 변재운







원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바 없고,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원고의 부녀자 신도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난 사실이 없다.

주위적으로 피고 국민일보에 대하여 [별지 2-1]과 같은 정정보도를, 피고 쿠키미디어에 대하여 [별지 3-1]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국민일보에 대하여 [별지 2-2]와 같은 반론보도를, 피고 쿠키미디어 에 대하여 [별지 3-2]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

(1)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의 문언과 전체의 흐름 및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은 "원고가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는 부녀자 신도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부분이 원고 또는 원고의 교리 자체가 가정불화, 이혼을 조장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머지 부분 즉, "하나님의 교회가 신천지보다 위험하다"거나 "시한부 종말론의 중독 성이 강하다"는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2) 갑 제66호증, 을 제2, 4 내지 11, 13 내지 29, 32 내지 39, 42, 47, 55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아래와 같다.
- 원고의 창시자 안상홍의 저서인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1985년)'에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말로만 말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해석자들이 종말
 론들을 많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기 1988년에 대한 예언자는 나뿐만 아니라 (...) 그
 외에도 서기 1988년에 대한 예언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지





성소에 들어가시던 서기 1844년에서 168년을 함하면 서기 2012년이 마지막 끝날이 되 겠습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 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교육원에서 '기독교 참 진리 교육'에 반영할 목적의 설문조사를 하면서, Y2K (밀레니엄 버그) 대재앙에 관한 생각, 해성과 지구의 충돌로 종말이 올 수 있다는 데 대한 생각, 노스트라다무스와 많은 예언가들의 '1999년 지구 멸망' 예언에 대한 생각, 성경에 기목된 마지막 대재앙에 대한 생각을 묻고, 대재앙이 온다면 피할 길을 알고 있는지, 대재앙이 올 때 살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갈 것인지, 어떤 재앙에서도 구원해주는 유원절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를 묻었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응답자에게 1999년 멸망, 대재앙의 도래를 거듭 떠올리게 하는 동시에 대재앙으로부터 구원해주는 유원절(원고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이다)에 관하여 알리는 내용이다.
- 1999년 후반 원고가 발행한 책자 '십사만사천'에 "서기 2000년 1월 1일 0시 노아의 방주 이래 최대의 재앙이 온 세계를 휩쓴다"는 글이 기고되기도 하였고, 대재앙, 밀레 니엄 버그에 관한 언급과 함께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연약을 과한 이들에게 재앙을 선포하셨고 이 재앙은 이제 컴퓨터라는 예언된 살육 기계를 앞세워 인류에게 다가왔습니다. (...) 성경의 예언대로 분명히 대재앙의 때는 임박하게 우리들에게 달려 오고 있습니다"라는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 '한국인의 신흥종교 2002 실태조사 연구집 1(부제: 자칭 한국의 재럼주들, 2002년)'이라는 책자에는 원고가 1988년, 1994년, 1999년 지속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신도들에게 유포하였고, 가족들과의 마찰로 가출하는 신도들로 인해 가족들의 탄원이 매년제기되어 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위 책자의 저자인 탁지원에 대한 사건[서울지방법원 2003노7378호 판결, 대법원 2004도207호 판결(확정),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3가합6020호 판결(확정)]에서 법원은, 원고가 안상홍 사망 후 3년되는 1988년 종말이 온다는 취지의 전도서를 만든 바있고, 1999년에는 신도들에게 Y2K나 1999년 지구멸망예언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었으며, 원고 내부에 2012년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주장 또한 제기되고 있는 사실, 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원고의 시한부 종말론을 취재하고 보도하려고 한 사실, 원고의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피해자 남편모임을 결성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위 책자 내용이 그 세부적인 점에서 표현이 잘못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원고의 입장에서 오해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 대표자의 저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에는 "마귀는 부모나 자녀, 이웃, 일 가친지, 아내, 남편, 친구 등 주위 사람을 동원해서 믿음 생활을 췌방하는 요인을 발생 시켜서 시험을 합니다"라는 구절이 있고, "지상 가족은 하늘 가족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가족과 종교적 갈등이 생길 경우 가족, 가정보다는 신앙을 우선 시하여야 한다는 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신도들이 관련된 이혼 판결문 등에 의하면, 원고의 부녀자 신도들 중 종교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되고, 부녀 자 신도들이 어린 자녀를 원고 교회에 데려가 원고의 교리를 가르치거나, 긴 시간 예 배에 참여시키거나, 조용히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 벌을 준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인 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에 일부 정확하지 않거 나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하 여 시한부 종말론(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둔 종말론)을 제시한 사실, 원고의 부녀자 신 도들 중 일부는 종교문제로 가출과 이혼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교리에 권위가 있는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불안감과 그 신도의 가정불화, 이혼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전적으로 부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였고, 이를 믿는 부녀자들의 가출, 이혼, 아동학대, 양육포기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은 그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 청구

- (1) 원고는, "원고가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원고의 부녀자 신도들이 가출, 이혼, 아 동학대, 양육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한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종말론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시한부종말론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였고,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으며, 그러한 불안감과 신도의 가정불화, 이혼 등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독실한 신앙생활을 강조하기 위해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였다고 하더라도





나. 교세 확장, 재산 형성

1) 기사 내용

이 사건 기사는 [별지 1]과 같은데, 그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대구지역 하나님의교회를 담임했던 우중현씨는 "하나님의교회는 1988년, 1999년, 2012년 시 한부 종말론을 제시하며 400개 교회, 20만명 신도로 교세를 계속 확장시켜 왔다"면서 "이렇게 형성한 재산만 3조~4조원 가랑 된다"고 설명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한 바 없고,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여 교세를 확장시 키거나 재산을 축적한 사실이 없다.

주위적으로 피고 국민일보에 대하여 [별지 2-1]과 같은 정정보도를, 피고 쿠키미디어 에 대하여 [별지 3-1]과 같은 정정보도를 구한다.

예비적으로 꾀고 국민일보에 대하여 [별지 2-2]와 같은 반론보도를, 꾀고 쿠키미디어에 대하여 [별지 3-2]와 같은 반론보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정정보도 청구

- (1) 이 사건 기사 중 위 부분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적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신도에게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1988년, 1999년, 2012년 시한부 종말론으로 불안감을 조성하여 400개 교회, 20만 명신도로 교세를 계속 확장시켜 왔으며, 이렇게 형성한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일정한 시간의 한계를 둔 종말론)을 제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1964년 설립된 이래 2014년경을 기준으로 전 세계 175개 국가의 2,500여 교회에 200만 명 이상의 등목 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국내에 400여 개 성전 및 신학원, 연수원등 부설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보유한 성전 및 부설기관 등 재산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재산의 원천은 결국 원고 신도들의 헌금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리에 권위가 있는 목사가 시한부 종말론을 설교하면 이를 믿는 신도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고, 그러한 불안감과 원고의 교세확장 및 신도들의 헌금 또는 재산헌납을 통한 원고의 재산형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인과관계 를 전적으로 부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시한부 종말돈을 제시해 교세를 확장하고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그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에 관한 원고의 정정보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반론보도 청구

- (1) 원고는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해 교세를 확장하거나 재산을 형성한 사실이 없다" 는 내용의 반돈보도를 청구한다.
-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8년, 1999년, 2012년의 종말을 제시하여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였으므로, 원고는 "1988년, 1999년, 2012년의 시한부 종말론을 제시하 지 않았다"는 내용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 이 사건 기사 중 "원고가 불안감을 조성하여 교세를 확장하거나 3~4조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부분은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한다.





는바, 위 기사는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 출판으로 헌법상 두텁게 보호된다.

- 이 사건 기사는 원고의 신도였다가 탈퇴한 사람들의 주장 등을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성·게재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위 탈퇴자들의 주장·의견이라는 점도 명시하였다.
- 이단적 형태의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 단체의 이단성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해에 관 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점을 알리고 주의를 촉구하는 테 에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
- 이 사건 기사에는 과장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저 속하거나 모델적인 표현이 사용된 바도 없다.
- (3) 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기사에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할 만한 사실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적시한 사실 중 일부가 다소 과장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신앙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국민일보, 피고 쿠키미디어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바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 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였으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17:	50	
	관사	임은하	01	2	司師
	판사	남인수 .	Vn	2	午廳

첨부3.

언론에서 다룬 하나님의 교회의 미성년자 포교 및 피해 사례

유치원생 아이 유아방에서 아동학대

〈하나님의교회에 다니는 엄마에 의해,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딸과 반대하는 아빠의 대 화 녹취록〉

김민수(아빠, 가명): 예배 보다가 떠들면 어떻게 해? 거기서?

김수화(딸, 가명): 맴매.

김민수: 맴매 해?

김수화: 응.

김민수: 어디를 때려?

김수화: 입, 손.

김민수: 입하고 손을 막 때려?

김수화: 응.

이렇듯 아이들은 유아방에서 말을 듣지 않거나 예배시간에 소리를 낸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고 드나들면 여지없이 매를 맞았고, 울기라도 하면 입을 틀어막고 데리고 나가, 아 이가 지쳐 잠이 들게 할 정도로 제재를 가하였다고 한다.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아동학대' 사례들

▶ 신앙병리가 낳은 자칭 '어머니 하나님', '시한부종말'... 아동들에게 세뇌한다면?

교회 유아방에서 교주 영상 시청, 틀어주는 찬양 노래

▶ 아이들에게 교주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 세뇌

교회 <u>유아방에 하루 종일 갇혀 있는 아이들은, 놀면서도 계속 틀어져 있는 교주와 종말</u> 관련 영상을 시청해야 했고, 교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야 했다.

〈유치원생들이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

나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 좋아요.

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떡과 포도주를 주신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과 피라고 알려주셨죠.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 보세요.

오세요! 와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십자가 세우지 마세요. 일요일도 거짓말예요.

우리는 이 세상 교회엔 없는 어머니도 있죠.

우리의 구원자 안상홍 님도 계신답니다.

안상홍님 믿어야 하늘나라에 가죠!

<나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안상홍님 나는 알아요 우리 하나님 어머니 안상홍님 어머니 생명수를 주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 주신대요

<비가 오고요>

비가 오고요 바람이 불어요 오늘은 안상홍님 만나는 안식일 정말 어떡해야 할까요 낮잠 자야 할까요 만화영화 봐야 할까요 아니 아니 정말 안되죠 예배드리러 가야죠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아동학대' 사례들

▶ 신앙병리가 낳은 자칭 '어머니 하나님', '시한부종말'... 아동들에게 세뇌한다면?

<mark>만5세</mark> 아이의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의 성명	생 성 병 역 원인 1998년 # # # # # # # # # # # # # # # # # # #	연병	만	5 A)
환자의 주소	서운 唯中中 中国中 四·3		-Military	all Sagar
병 명 집임상적 추정 □의 총 친 단	의상후 스트레스 장에 중중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E F	국 질 유 번 43.1 32.1	1.
반 병 인	년 원인 조진일 조대를 하게 조대			
황 후 지 료 의 검	상기 환아는 우울감, 응읍, 짜증, 의욕제하, 불안 등을 주소를 이 내원한 환아로 상기 진단하에 늘어지다. 약물치로 시행하고 환아임, 엄마의 종교문제로 인한 부모의 이혼이 가장 큰 스트를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엄마와 같이 갔던 교회에서 neglect 목 care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환아도 엄마를 만나기를 위치 않는 등 엄마와의 접촉이 아이에게 더욱 소트레스로 작용 등성의 많은 것으로 사료성으로 최소한 6개원, 이상의 점신과	있는 제소기 문 제	THE THE P	

▲ 엄마의 종교문제로 인한 아이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진단

〈반대하는 아버지와 아이의 대화 녹취록 일부〉

정철우(아빠, 가명): 진짜 뚱뚱해?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정아라(딸, 가명): 아이, 몰라.
정철우: 그 누가 하나님이라 그랬어?
정아라: 엄마.
정철우: 엄마가 하나님이라 그랬어? 여자보고?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아동학대' 사례들

▶ 신앙병리가 낳은 자칭 '어머니 하나님', '시한부종말'... 아동들에게 세뇌한다면?

<mark>유치원생</mark> 원아의 문장완성 검사

	문장완성검사(아동용)	Washing.
And the same of th	이름: 집	(7)
•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작문을 부탁합니다. 다음의 낱말로 시작되는 문장을 완성시켜 보십시오. 반드시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그대로 말해야 하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모두 써 넣으십자도.	

1. 내가 가장 행복한 때는 얼마와 아빠랑 같이 살아
그 기가 등 너 어렸다면 얼마 구설이 가는 것이 나는
4. 다른 사람들은 나를
5. 우리 엄마는 나 與 교호 (5) 만나나
6. 나는 원경이 2 7. 나에게 가지 중에 3
8. 네가 제임 건전하는 지유
8. 네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얼마가 더너 가는 것 9. 대부분의 아이들은 아 좋아. 6세 자연들은 종아
10.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면 얼마 전화에 무기가 하고 있다.
11.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_ 아비-
12.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전 이나 내
13. 우리 아빠는 _ 폴 C ト _
14. 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호

→다음면에 계속

종말론을 믿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

종말론에 빠진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동일한 시한부 종말을 가르쳤다. 종말이 오면 속히 어디로 피신해야 된다느니, 어디에 전화를 해야 한다느니, 비상물품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등. 위기의식을 심어주었다. 2012년 당시 실제 상황을 기록한 녹취록 내용이다.

마광석(아빠, 가명): 가영아 아빠 봐봐, 엄마가 2012년 올해에 지구가 망한다고 막 가영이한테 얘기해? 대답해봐 가영아. 아니 크게 대답해 봐.

마가영(딸, 가명): 응

마광석: 지구가 어떻게 망한데? 어? 엄마가 그런 것도 막 설명해 줘? 어떻게 망한데?

마광석: 가영아. 올해는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냐, 가영이가 만약에 올해 지구가 안 멸망하면?

마가영: 만약이잖아?

마광석: 지구가 멸망 안 하고 가영이가 4학년에 갔어. 가영이가 4학년이 됐어. 그럼 지구가 안

멸망했잖아?

마가영: 4학년이 된 바로 그날...(얼버무림)

마광석: 그러면 한 5학년 됐을 때 지구가 안 망했어 그러면?

마가영: 그럼 이상한 거야...

마광석: 엄마가 2012년 지구가 망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란 게 드러나잖아?

마가영: 진짜 망한다니까!

마광석: 올해 지구는 안 망해 가영아!

마가영: 망해!

마광석: 올해 지구는 안 망한다니까! 그러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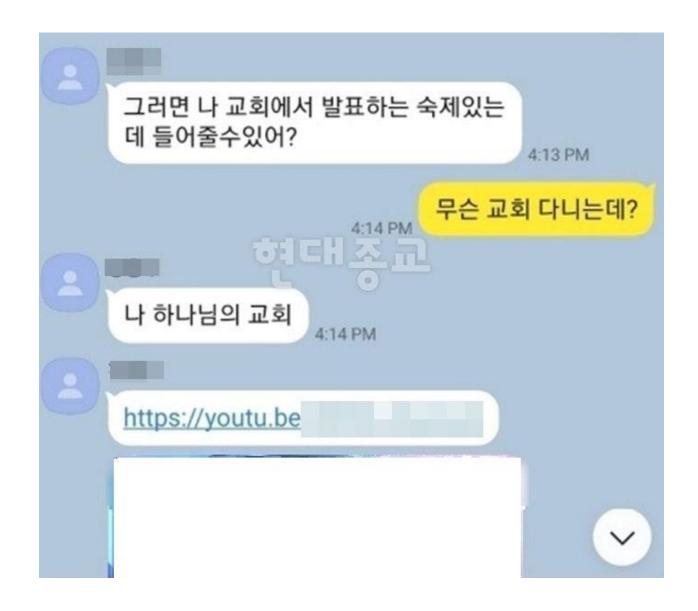
마가영: 망하기만 해봐라!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아동학대' 사례들

▶ 신앙병리가 낳은 자칭 '어머니 하나님', '시한부종말'... 아동들에게 세뇌한다면?



중학교 반 친구의 포교 사례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들이 하교 후, 집에서 저와 함께 있던 중에 새 학년 같은 반 친구로부터 카톡이 왔습니다. 갑자기 자기를 도와줄 수 있냐며 교회에서 무슨 발표를 하는데 좀 들어달라고 했고,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먼저 열어보니 하나님의교회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mark>영상을 다 보면 줌(zoom)으로 같이 뭘 보자</mark>고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아이

어떤 아이는 성년이 돼서도 문제가 이어졌다.

어릴 적 엄마따라 하나님의교회에 다녔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대학에 진학했으나 적응을 못하고 휴학한 후, 군대에 갈 요량으로 징병검사를 받았으나 정신질환 판정을 받고, 보류 당하는 일이 있었다. 그 친구가 과연 어떤 생활을 해왔기에 저렇게 사회에 부적응하게 됐을까 싶어 만나 나눈 대화의 일부이다.

▷ 군에

입대할 생각은? ▶ 검사를 받았는데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서 재검을 받아야 한다. ▷ 하나님의교회 다닐 때, 다니는 사람들과 안 다니는 사람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얘기하기도 하나? ▶ 안 다니는 사람들은 짐승과 같다고 했다. 마귀가 역사한다고도 했다. ▷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가르치니 아무래도 그곳에서 나와서 사회에 적응하는게 쉽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 사람 만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부담스럽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교사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도 원인이 되기도 하다. 어느 날선생님이 불러서는 너에 대해서 알았는데, 영 아닌 것 같다고 하셨다. 5학년 때 이후로학교 숙제나 준비물들을 거의 하지 않았다. 엄마는 관심이 없었다.(부모님이 원망스럽나? 문자,

지는이 문 한 대한 나다. 한 번 다시한 하고 따라고 해 경하면 원하니다.

*** 전 문 제 라 하면 하기 하는 등 지만 가 소 사 다 같은 가는 보안 보안 보안 할 때 없니다.

*** 이는 종교는 나는 에 게 하는 등 을 주고 하는 종교는 하는 하게 비를 하는 등 하는 하게 사 가 하는 지나는 이 다 나 지 있으면 즐게 습니다.

*** 전 시 사 상은 하는 보 하게 사 건 리 가 이 사 습니다.

보는 게 있으면 좋게 습니다.

이사는 이 나 함은 모든 사 는 이를 사 다 하나 다 하나 다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나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나 하는 이 나는 이 나를 한 다 다 나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나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나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나는 이 나를 한 다 다 하는 이 나를 한 다 하는 이 나를 한 다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하는 이 나를 한 다 다 하는 이 나를 한 다 하는 이 나를 한다.

▲ 엄마의 종교문제로 인한... 아이의 이혼반대 진술서

이단 '하나님의교회' 신도들의 '아동학대' 사례들

▶ 신앙병리가 낳은 자칭 '어머니 하나님', '시한부종말'... 아동들에게 세뇌한다면?